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371
----------	------

2013년 7월 1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6월 14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13년 6월 18일
- 다. 상정일자 : 제24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년 7월 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문철)

가. 제안이유

-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경영수지 적자 개선과 신규사업 추진 환경 마련을 위하여, 회사의 목적사업을 추가 규정하고 기존 추진사업을 정비 및 구체화함으로써, 각종 사업수주 참여환경 조성으로 자체 경영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목적사업 추가(안 제6조)
- ‘컨벤션’ 사업을 국제회의, 인센티브관광, 전시 등을 총칭하는 ‘마이스(MICE)’ 사업으로 변경(안 제6조제2호)
-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회사 목적사업에 ‘기타 회사의 목적과 관련되는 사업’ 을 규정함(안 제6조제8호).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조직담당관(위원회): 해당없음.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협의완료(비용발생 요인 없음.)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해당없음.
- 기타
 - (1) 입법예고(2013. 5. 2. ~ 5. 22.) 결과 :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박용훈)

- 동 조례안은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지방공기업으로서 서울관광사업의 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주식회사로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목적사업을 추가하고, 일부 용어를 변화된 관광사업 환경에 맞춰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용어를 수정하는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6조(사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u>컨벤션사업</u> 가. <u>컨벤션</u> 유치지원사업 나. <u>컨벤션</u> 관광상품 개발 다. <u>컨벤션</u> 해외마케팅 사업	제6조(사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u>국제회의, 인센티브관광, 전시 등(이하 “마이스(MICE)”라 한다)</u> 관련 사업 가. <u>마이스(MICE)</u> 유치지원사업 나. <u>마이스(MICE)</u> 관광상품 개발 다. <u>마이스(MICE)</u> 해외마케팅 사업

- 우선, 용어를 수정하는 개정안 내용은 ‘컨벤션’을 모두 ‘마이스(MICE)’로 바꾸는 것인데,

‘컨벤션’은 대규모 회의장이나 연회장, 전시장 등의 전용 시설을 갖추고 대규모 국제회의나 전시회를 유치하는 산업을 뜻하고,

‘마이스(MICE)’는 좁은 의미에서 국제회의를 뜻하는 ‘컨벤션’이 회의, 관광, 전시 등 복합적인 산업으로 해석되면서 생겨난 개념으로,

‘컨벤션’을 ‘마이스(MICE)’로 수정하는 것은 사업의 확대라기보다 관광산업의 변화를 반영한 용어수정이라 판단됨.

<신규사업을 추가하는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6조(사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4. 관광자원 및 편익시설 개발사업 가. 관광단지 조성 및 관리·운영 나. 관광자원 및 관광지 개발 다. 쇼핑, 공연장, 위탁시설 등 관광시설개발사업 <신설> <신설> <신설>	제6조(사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4. 관광자원 및 편익시설 개발사업 가. 관광단지 조성 및 관리·운영 나. 관광자원 및 관광지 개발 다. 쇼핑, 공연장, 위탁시설 등 관광시설개발사업 라.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면세점) 사업 7.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단,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여행업 및 카지노업을 제외한다. 8. 기타 회사의 목적과 관련되는 사업

○ 신규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제6조제4호라목, 같은 조 제 7호와 제8호의 신설인데,

- 안 제6조제4호라목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면세점) 사업’은

2007년 6월 30일자 삼일회계법인의 「서울 마케팅 전담기구 설립 타당성 및 사업성 검토」에서도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수익 창출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사업으로,

외래관광객 서울 방문자 수가 2000년 438만명에서 2012년 919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는데도, 서울시내 면세점은 2000년 이후 6개로 정체되어 있어 기존 면세점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고,

보세판매장의 특허 부여 요건과 절차, 평가기준을 새로 규정하고, 특허기간을 기존 10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수정한 개정 관세법

이 2013년 10월 1일자로 시행예정이어서 향후 면세점 시장 변동이 예상되며,

서울시가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서울지역 면세점 추가 설치와 지방공기업의 참여를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6조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서 배제하고 있는 여행업과 카지노업을 제외하면,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인데,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수익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조례에 명시한 것임.

- 마지막으로 안 제6조제8호 '기타 회사의 목적과 관련되는 사업'은 관광사업 환경변화 등의 이유로 수시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기술적인 조치라 판단됨.

○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가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하여 민간과 공동으로 설립한 주식회사이므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 또는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경기관광공사나 제주관광공사에 비해 사업의 범위가 보다 더 넓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동 개정안의 경우 타 지방자치단체의 관광공사와 비슷한 범위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참고자료>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비교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한다.

1. 관광자원 개발사업

- 가. 관광단지 조성 및 관리운영
- 나. 관광자원 및 관광지 개발
- 다. 관광개발에 따른 외자유치 사업
- 라. 그 밖에 관광객 이용 편의시설 개발

2. 특수 관광시설 개발사업

- 가. 쇼핑 관광시설
- 나. 관광 공연장시설
- 다. 특수 위락시설
- 라. 그 밖에 문화예술등과 연계한 관광여가시설

3. 관광 진흥사업

- 가.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업무
- 나. 관광 관련 각종 연구조사업무
- 다. 관광 관한 각종 국내외 협력지원
- 라. 관광정보 및 출판관련 사업
- 마. 관광인력의 양성과 훈련

4. 남북 관광교류에 관한 사업 및 협력지원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

6.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

7. 위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한 설계용역 및 감리 등 업무

8. 「지방공기업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 사업 등

9. 경영수익 증대를 위한 공사재산의 임대사업

10. 국제회의(컨벤션)산업 육성 사업

11. 면세점의 설치 및 운영사업

② 법 제54조에 따라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자본금의 일부를 관광사업을 행하는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0조(사업)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관광 통합 홍보·마케팅
 - 가. 국내외 관광 홍보·마케팅
 - 나. 국내외 홍보소(관) 운영
 - 다. 국제회의 유치 마케팅 및 지원
 - 라. 관광기업 홍보 지원
2. 관광 상품 개발 및 관광자원 개발
 - 가. 관광 상품 개발사업(기업연계)
 - 나. 축제지원 및 개발, 문화관광컨텐츠 개발 등의 관광자원개발사업
 - 다. 우수관광기념품 개발·지원
 - 라. 관광안내판 등 안내체계 통합 디자인
3. 관광관련 연구조사 및 관광산업 지원
 - 가. 관광 및 관광산업 통계의 작성
 - 나. 관광정책·마케팅 계획수립 조사연구
 - 다. 관광산업 지원 업무
 - 라. 관광기업·상품 품질진단 및 네트워크
4. 통합 관광안내 시스템
 - 가. 제주웰컴센터(welcome center)의 관리 및 운영
 - 나. 관광안내서비스 기능 통합
 - 다. IT등 첨단기술 활용 통합관광 정보시스템 운영(U-Travel 운영)
5. 관광 관련 교육 및 컨설팅
 - 가. 관광기업 컨설팅
 - 나. 관광지개발·상품 개발 컨설팅
 - 다. 관광관련 산·학·연 연계사업
 - 라. 관광종사원 인력양성
6. 관광공사 수익사업의 발굴 및 추진
 - 가. 지정 면세점의 운영
 - 나. 그 밖에 도지사가 승인한 사업
7. 국가 또는 도의 사업을 대행 하거나 수탁한 업무

<참고자료>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정관 및 조례개정 추진 일정

- '13. 2. 14. : 제30차 이사회 정관개정 의결
- '13. 3. 7. : 제245회 시의회 정관개정 의결사항 시의회 보고
(면세점 관련 조례 우선 개정 필요 지적)
- '13. 3. 29. : 제5기 주주총회 정관개정 수정안 의결
(면세점 조항 제외)
- '13. 4. 24. : 조례일부개정 방침 수립(문화관광디자인본부)
- '13. 5. 2. ~ 22. : 조례일부개정 입법 예고
※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접수 사항 없음.
- '13. 5. 23. : 법제심사 의뢰(문화관광디자인본부)
- '13. 6. 4.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원안 가결(법무담당관)
- '13. 6. 5. : 제31차 이사회 조례 개정 경과 보고
- '13. 7. 5. : 서울시의회 조례 일부 개정 심의 및 의결
- '13. 8. : 제32차 이사회 정관개정 의결
- '13. 9. : 제6차 임시주주총회 개최 및 의결
- '13. 10. : 법인등기부등본 변경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마. 관광활성화를 위한 광고·홍보·전시 및 행사 등 대행사업
- 바. 관광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사업 및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제6조제2호 중 “컨벤션 사업”을 “국제회의, 인센티브관광, 전시 등(이하 마이스(MICE)라 한다) 관련 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나목 및 다목 중 “컨벤션”을 각각 “마이스(MICE)”로 한다.

제6조제4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라.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면세점) 사업

제6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관광 진흥 지원 사업

- 가. 관광 관련 각종 연구·조사업무 및 관련 용역사업
- 나. 관광정보 및 출판관련 사업
- 다. 관광전문 인력의 양성과 훈련

7.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단,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여행업 및 카

지노업을 제외한다.

8. 기타 회사의 목적과 관련되는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제6조(사업) _____.</p> <p>1. _____. 가~라.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2. <u>컨벤션사업</u> 가. <u>컨벤션 유치·지원사업</u> 나. <u>컨벤션 관광상품 개발</u> 다. <u>컨벤션 해외마케팅 사업</u></p> <p>3. _____.</p> <p>4. _____. 가~다.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5. _____.</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6조(사업) _____.</p> <p>1. _____. 가~라.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right;">마. <u>관광활성화를 위한 광고·홍보·전시 및 행사 등 대행사업</u></p> <p style="text-align: right;">바. <u>관광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사업 및 소프트웨어 개발·공급</u></p> <p>2. <u>국제회의, 인센티브관광, 전시 등(이하 마이스(MICE)라 한다) 관련 사업</u> 가. <u>마이스(MICE) 유치·지원사업</u> 나. <u>마이스(MICE) 관광상품 개발</u> 다. <u>마이스(MICE) 해외마케팅 사업</u></p> <p>3. _____.</p> <p>4. _____. 가~다.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right;">라. <u>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면세점) 사업</u></p> <p>5. _____.</p> <p style="text-align: right;">6. <u>관광 진흥 지원 사업</u> 가. <u>관광 관련 각종 연구·조사업무 및 관련 용역사업</u> 나. <u>관광정보 및 출판관련 사업</u> 다. <u>관광전문 인력의 양성과 훈련</u></p> <p style="text-align: right;">7. <u>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단,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여행업 및 카지노업을 제외한다.</u></p> <p style="text-align: right;">8. <u>기타 회사의 목적과 관련되는 사업</u></p>